

KNSI 특별기획 제22-2호

미국의 대북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홍의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I.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및 전개과정
- 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및 해제과정
- I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IV.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급진전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4월 8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핵 프로그램 신고 및 상응조치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6월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27일에는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미국 역시 상응조치로 6월 26일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8월 11일 해제 예정)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한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진전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채 6.15 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 방향 수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7월 11일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및 전개과정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50년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대북 제재 강화기, 2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의 대북 제재 완화기, 3단계는 2002년 2차 북핵위기부터 2006년까지의 대북 제재 재강화기이다.¹⁾

우선 제1단계 대북 제재 강화기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사흘만인 1950년 6월 28

일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같은 해 12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해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제정하여 국내 북한자산을 동결시키고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도 금지시켰다.

1950년대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왔다. 1951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²⁾ 부여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동년 9월 최혜국 대우 부여가 금지되었다. 1974년 무역법에서는 최혜국(혹은 정상교역관계) 대우가 금지된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³⁾ 공여가 금지됨으로써, 북한은 1975년 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시장에 수출할 경우 쿠바와 함께 Column 2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데, 이는 WTO가입 국가 또는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에게 적용되는 Column 1 관세보다 최소 2배에서 수십 배 이상까지 높은 수준이다.

<표 1> 미국의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근 거	관련법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 ○ 방위산업법 ○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튼우즈협정법 ○ 수출입은행법 ○ 무역협정연장법(무역법) ○ 대외원조법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 대외지원법 ○ 수출입은행법 ○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 국제금융기관법 ○ 대외활동수권법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화산에 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 핵화산금지법 ○ 북한 위협감소법

주: 그 외 북한의 인권문제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법으로는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있음.

자료: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2007-09, p.26.

또한 1961년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은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동법은 공산주의 국가, 테러지원 국가, 인권침해 국가 등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1986년에 개정된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보험, 신용 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북한도 거래제한 국가로 명시되었다. 한편, 북한은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한층 엄격한 경제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1988년 1월 20일부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등재하고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외원조금지, 무역제재 등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였는데,⁴⁾ 이는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를 체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95년 1월 행정명령으로 통신,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화·통신의 연결과 이와 관련된 거래 허용, 개인적인 여행과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용 허용, 언론사의 지국개설 허가, 북한이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은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미국 금융기관의 사용허가, 북한정부의 자산이 아닌 동결자산의 해제, 미국기업이 내연재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 및 활동,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거래의 허용 등이다.

1997년 4월에는 해외자산통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부분적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등이다.

이상의 조치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였다면, 2000년 6월에 단행한 완화조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허용, 대부분의 미국 소비재상품의 대북한 판매 및 금융 서비스 허용, 농업·광업·석유·목재·교통·도로·여행 및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 인척 및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직접송금 허용, 북미간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통상적인 화물수송의 허용, 북미간 상업적인 항공기 운항의 허용 등이다. 이러한 제재완화 조치로 적성국 교역법 및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완화되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대북경제제재와 미사일기술 통제 관련 경제제재 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2000년 이후 부시 정부가 출범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강

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2006년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자 경제제재를 재강화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였는데,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 해외자금의 동결조치를 취하였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는 애국법(Patriot Act) 311조를 적용해 방코 텔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거래 지원체의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북한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착수하였는데, 2005년 10월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8개의 북한기업을 대량살상무기 및 이동수단의 확산대상자로 지정하여 동 기업들의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고 자산을 동결하였다. 이밖에도 2006년 4월에는 해외자산통제규정에 의거 미국기업이나 미국거주 외국기업들이 북한선적으로 등록한 선박을 소유, 임차,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됐다고 지정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및 해제과정

대북 경제제재에서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적성국 교역법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 적용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과 관련된 경제제재는 금융거래를 포함한 교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적성국 교역법의 해제는 대통령의 포고, 상하원의 공동결의안, 행정명령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 미국은 이번에 대통령 포고에 의해 지난 6월 27일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에서 제외하였다. 적성국 교역법의 취지가 미국과 교전중인 국가와 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을 이번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적대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제외됨으로써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국가는 쿠바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해 1988년 1월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미국무성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을 비롯하여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되어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된 제재로 인해 수출관련 제한이 강화되고, 국내·외 금융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절차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f항(Arms Export Control Act, Section f)에 규정되어 있다.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을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장에게 해제 대상국이 지난 6개월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할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5일간 의회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 해제가 발효된다. 부시 정부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북한은 8월 11일에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주요 경제제재

구 분		제제내용
적성국교역법	교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의 수입은 재무성의 사전승인 후에 가능 ○ 북한국적의 선박에 대한 소유, 리스, 운항, 보험부보금지
	금융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융기관을 경유한 금융거래 제한 ○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테러지원국 지정	교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군수품의 수출 및 재수출의 금지, 관련 금융지원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부가가치 중 미국산의 가치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 수출제한(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 ○ 테러지원국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경제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지원반대(국제금융기관법) ○ 미 수은 대출·보증 등 지원금지(미국수출입은행법) ○ 대외원조금지(대외원조법)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금지(해외민간투자공사법)

자료: 김정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절차와 해제에 따른 영향,” 『수은북한경제』(2007년 가을호), p.85.

III.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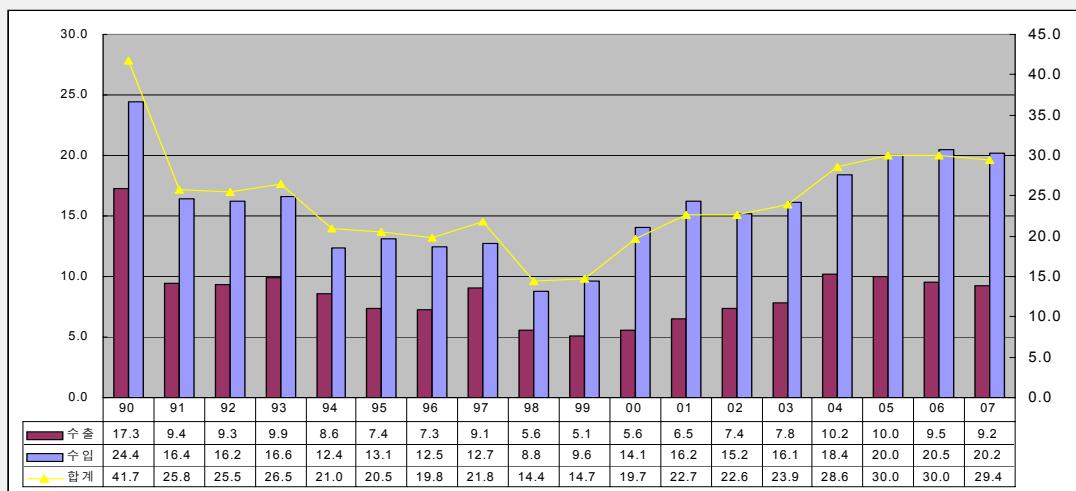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대북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등 대외경제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우선 대외무역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업가동률과 수출상품 경쟁력,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이외의 대북 경제제재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북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과 대외무역 상대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⁵⁾

<그림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적성국 교역법이 해제되면서 대외자산통제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수입승인제와 자산동결이 해제되고, 무역거래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우선, 수입승인제가 해제되면 북한상품을 미국시장으로 수입할 때 미 재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북미간 교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대미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입도 2007년에 17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북한의 대미수출은 물론 수입도 일정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된다 해도 북한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이 유지됨으로써, NTR 지위가 부여되기 전까지 북한산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전략물자 거래의 완화 및 수출관리령(EAR)에 의거한 수출통제가 해제되는 것도 북한의 무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민수용 품목(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반테러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사안별로 심의,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승인과정에서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유연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관리령에 의해 미국산 요소가 특정 비율 이상 포함된 품목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제품의 재수출로 간주하여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통제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10%였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해제되면 통제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미국기업 및 제3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증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당시 베트남의 상황과 현재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베트남의 경험은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미국의 경제봉쇄가 해제된 1994년과 1995년의 연평균 대외무역 규모가 11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3년 이전 5년간의 연평균 수준인 56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표 3>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북 한	중 국	베 트 남
1991 ~ 96 ¹⁾	24 ²⁾	25,476	1,217
1997	307 ²⁾	44,237	2,587
1998	31 ²⁾	43,751	1,700
1999	-15 ²⁾	40,319	1,484
2000	5 ²⁾	40,772	1,289
2001	-24 ²⁾	46,846	1,300
2002	12 ²⁾	52,700	1,200
2003	158 ²⁾	53,505	1,450
2004	197 ²⁾	60,360	1,610
2005	50 ²⁾	72,406	2,021
2006	135 ²⁾	69,468	2,315

주: 1) Annual average

2) 이는 추정치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인해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도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있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0년대 들어 △무역사업의 발전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⁶⁾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제시한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기술개간 및 현대화 △생산정상화 △외화 획득 △인민생활 제고 등이다.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리위주의 대외정책’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외정책도 실리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북한 당국은 관련 법제 정비 및 경제특구 확대 조치, 경제대표단 파견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도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 외자유치에 있어 가장 큰 결집돌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핵문제의 진전, 북미관계의 개선과 경제제재 해제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점에서 외자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투자 설비 및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에서 이전에 비해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제3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높은 정치적 리스크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소극적 자세 △열악한 산업인프라 △투자관련 법제의 미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인적자원의 부족 등의 제약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외자유치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외자유치의 확대는 이번 경제제재의 해제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가입과 해당 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 여부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 가입은 IMF 회원

만이 가능한데, IMF 가입은 일정 수준의 제도개혁과 함께 할당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공적개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책협의, 경제통계 작성·제출, 시장경제개혁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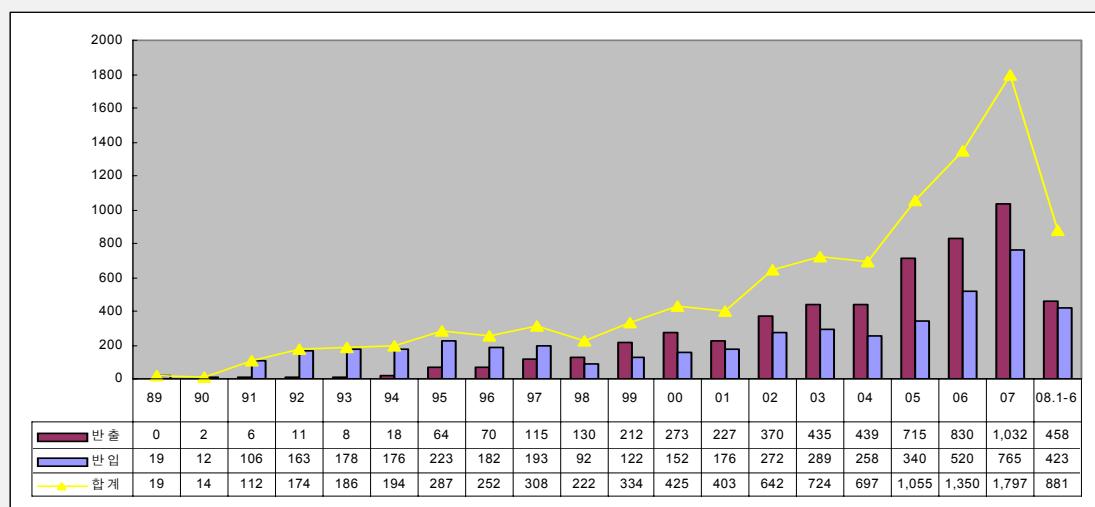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개발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제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시기와 규모는 북한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과 체제개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IV.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남북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임에 분명하다. 다만, 금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전반적인 교류·협력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은 남북관계 경색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6자회담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등에 따른 외부적 상승요인을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림 2>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일부

사실 남북경협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우선 남북교역은 2007년에 17억 9,789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나 증가하였는데, 2008년도 상반기 중에도 8억 8,07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북교역의 증가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표 4> 경제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 현황

구분	'91~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5	계
협력사업	16	2	5	2	2	26	38	23	176	41	331
협력사업자	42	1	6	3	4	28	38	24	176	42	364

자료: 통일부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상반기 중에 협력사업이 41건에 머물러,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주춤하고 있다. 대부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⁷⁾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정부 관계자들의 철수와 북측의 대남 강경 발언 및 금강산 총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자기들이 문을 닫게 하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쉽게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3통문제 등과 같은 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최근 정치적 이슈나 돌발사건 등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직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우선 전략물자 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특히 설비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섬유·신발·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북한상품에 대한 NTR 지위는 부여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시장으로의 진입규제가 없어지고 유럽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시장진출도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합의,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를 통해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관계 개선과 핵문제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도 당초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008/07/17) 

<각주>

-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2007-09를 참조.
- 2) 최혜국대우는 미국에서 1998년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로 용어를 변경함.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은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임.
- 3)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일방적 시혜 성격의 조치로서 1974년 도쿄라운드에서 선언되었음.
- 4) 미국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한 것은 1989년 초였는데, 당시 미국은 해외자산통제규정, 수출 관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비상업분야와 출판, 인도주의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완화조치를 취하였음.
- 5) 2007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29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다(2006년은 0.2% 감소). 이중 수출은 9억 1,900만 달러로 3.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억 2,200만 달러로 1.3% 감소하였다. 지난 해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에 따른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미 양자대화의 복원, 남북관계의 진전 및 정상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3 합의의 이행이 BDA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이 정체 내지는 감소함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 6)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246–285 참조.
- 7) 개성공단은 2007년에 1단계 분양을 완료하여 2008년 3월말 현재 6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만 5,930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도 2007년에 1억 8,477만 달러를, 금년도 1/4분기에는 6,07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